

의안번호	2202567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4. 9. 2.
추 계 번호	24B237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환골재¹⁾ 품질인증을 KS 인증과 통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1,500만원(연평균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안 제36조)	7	33	49	59	67	215	43

주 1.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추계기간 중 순차적으로 KS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전환업체의 1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검사대상 업체의 수, 검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²⁾ 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음(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하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으로 대체함 품질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름(제2항)	재량규정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 증 등)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안 제36조)
 - 개정안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 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법」 제20조⁴⁾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할 경우 예상되는 검사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⁵⁾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3.기준)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2.0

4)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순환골재 KS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품목 선정 및 인증기관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409개)가 추계기간인 5년 동안 단계적으로 KS 인증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의 10%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추가재정소요 = (검사대상 업체의 수) × (업체당 인증 항목의 수) × (검사 비용)

[표 2]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 수(2023년 기준)

(단위: 개)

업체 수	인증 수				
	계	아스콘	콘크리트 (굵은골재)	콘크리트 (잔골재)	도로용
409	637	27	184	25	401

자료: 국토교통부

- ① (검사대상 업체의 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409개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KS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
 - 전환업체 수⁶⁾: ('25)49개 → ('26)165개 → ('27)98개 → ('28)58개 → ('29)39개
 - 이때, 당해연도에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품목은 제외하고, 전년도까지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
- ② (업체당 인증 항목의 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당 인증항목의 수는 평균 1.5개임
 - 추계기간인 5년 동안 업체당 인증 항목 수는 1.5개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진행 후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KS 인증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 비용 외에 인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인증 신청업체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임

6) 전환업체 수 산출 근거

- (2025년) 아스콘(27개, 6.6%) 및 잔골재(22개, 5.4%) 품질인증 보유업체 ⇒ 49개 업체(12%)
 - ※ 現아스콘 순환골재 생산업체 KS전환 유리(설비 유사), 잔골재 생산업체 설비투자 여력 ↑
- (2026년) 굵은골재 품질인증 보유업체(설비투자 여력 양호) ⇒ 165개 업체(40.3%)
- (2027년) 도로공사용 품질인증 보유업체(열악한 업체, 195개) 중 50% ⇒ 98개 업체(24%)
- (2028년) 도로공사용 품질인증 보유업체(195개) 중 30% ⇒ 58개 업체(14.2%)
- (2029년) 잔여 모든업체 전환(도로공사용 20%) ⇒ 39개 업체(9.5%)

자료: 국토교통부

③ (검사 비용): 골재 1품목의 평균 검사 비용은 938,000원(2023년 기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로 1,078천원, 아스콘 979천원, 굵은골재 883천원, 잔골재 814천원

※ 이때, 검사 비용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 인증과 통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500만원(연평균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순환골재 KS 인증 품목에 대한 시판품조사 비용: 2026~2030년

(단위: 개, 천원,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검사대상 업체의 수(A)	49	214	312	370	409	1,354	271
업체당 인증 항목의 수(B)	1.5	1.5	1.5	1.5	1.5	-	-
검사 비용(C)	1,005	1,026	1,048	1,070	1,091	-	-
합 계 (E=A×10%×B×C)	7	33	49	59	67	215	43

주 1.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추계기간 중 순차적으로 KS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전환업체의 1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검사대상 업체의 수, 검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추계기간 중 순차적으로 KS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전환업체의 1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검사대상 업체의 수, 검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